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정리〉

더불어민주당

Q1 일반 국민들에게 좋아지는 것이 있나요?

▲수사·기소·재판에서 인권 침해는 줄고,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사법행정이 국민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수사 담당자가 그대로 기소를 하면 편견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어야 기소권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사는 기소권으로 저지하고, 무리한 기소는 철저한 수사로 차단해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검사가 수사를 못 하는게 위헌인가요?**

-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신분, 조직, 업무 등은 일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의 자격과 검찰의 조직, 직무는 국회의 입법재량 권한입니다.
- ▲헌법재판소는(2020헌마264·681) 2021. 1. 28.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Q3 **분리 후 검사는 무엇을 담당하게 되나요?**

- ▲검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Q4 수사는 누가 담당하게 되나요?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등에서 하게 됩니다.

Q5 6대 범죄는 누가 수사하게 되나요?

▲검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무죄판결률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판결률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소검사가 다르면 사건 이해도나 전문성이 떨어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요?

Q6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전문 법률가(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 이전 담당 검사는 수사 사항을 점검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수사의 합법성과 증거의 증거능력 등을 충분히 점검해야 기소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우일 뿐입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정리〉4

Q7

수사를 목적으로 입사한 우수한 검사 인재들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지 수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에 관하여 교육받지 않습니다.
현 검사들은 영장·기소 관련 업무등 공소유지
업무와 인권보호 기관 업무로 이원화 될 것입니다.

Q8 왜 지금 해야 하나요?

▲검찰정상화는 빠를수록 인권친화적입니다.
무적의 검찰권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역사는 김니다.

▲70여 년 전 열악했던 시대상황을 고려해 향후
수사·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제정
되었고 현 검찰의 권한이 정립되었습니다.

▲정치가 민주화되는 동안 검찰권은 막강한 권력이
되었고 그 영향력이 정치·행정·사법·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정리〉5

▲ 견제 없는 검찰권이 정치와 행정·언론 등을 통제하려 한다면 민주화의 후퇴와 국민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현 검찰이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 견제하기 어렵고 결국 억울한 국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9 **검사가 기소를 마음대로 하는 기소편의주의는 나쁜 건가요?**

▲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된다면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기소편의주의는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진행되거나
외압, 로비 등에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어 엄
격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 이 때문에 수사권 분리를 통해 자의적 기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치수사·정책수사 같은 것은

Q10 국민 일상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 검찰이 정치·정책수사를 통해 국민의 선택에
개입하고, 국가정책 등에 관여하려 한다면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정리〉⁷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수사권 완전 분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과거 국민의힘 등 타당 의원들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찬성했습니다.

▲이동섭 의원 (2017. 9. 12)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 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

▲주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 (2020. 12. 30)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곽상도 의원 (2018. 11. 14)

: 법안발의 제안이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을 설립

▲오신환 바른미래당원내대표 (2019. 10. 30)

: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 (2020. 12. 30)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금태섭 의원(2019. 10. 25)

: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야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정리〉 9

▲ 유승민 대선후보(2017대선, 공약)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급한

Q12 개혁이 아닌가요?

▲ 수사와 기소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 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2019년 여야 사개특위 4당 위원간 합의 사항을 기초 만들어졌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과도기적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제도 수립이 필요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2022. 03. 08)
: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정리〉10

▲ 검찰은 여러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능력 약화는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Q13 무마하려는 것 아닌가요?

▲ 수사·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비리와 범죄 세력에게 유리합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한 로비 이야기는 이미 익숙합니다. 수사·기소권한이 서로 견제하면 권력형 비리나 대형경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Q14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통제하나요?

▲국가 경찰, 지방 경찰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기관 등으로 수사권을 다면화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합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그 자체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직권입니다.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54조에 의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수사관의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감시제도, 일본·미국·영국의 경찰 위원회, 뉴욕·영국·홍콩·캐나다의 경찰비리 민원조사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외부 감찰기구를 설립해 수사기관을 통제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끝)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정리〉12